디자인과 특허 출원

디자인의 개념

Q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디자인등록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A 디자인은 보통 Design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Design은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건축디자인, 도시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디자인은 Design의 개념 중 제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등록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회사의 생산품과 이미지를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된 디자인은 무형의 금전적 가치를 가진 자산입니다.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동종 경쟁업자에 의한 도용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디자인등록은 자신의 디자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첫 번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 공개

Q 디자인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A a) 경고할 권리-디자인등록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b) 보상금청구권 발생-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3 제2항)

비밀디자인제도

Q 비밀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A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동안 디자인 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밀디자인제도라고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3조)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인이 정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3조제3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에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디자인권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심사, 심판,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디자인권의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유사디자인제도

Q 유사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A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가지 변형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타인의 모방, 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디자인을 등록받아 침해, 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사디자인제도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물품의 형상, 색채, 모양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공개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7조) 출원인은 출원시에 단독, 유사여부 구분을 명시해야 하며 그 후에도 자진해서 또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후 단독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사디자인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이전, 소멸됩니다. 단, 유사디자인권만을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으로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유사디자인은 독자성도 가지고 있어서 그 등록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독자적으로 등록취소나 등록무효가 될 수 있고, 독자적인 원인에 의하여 소멸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도 가능합니다.

김석현 변리사

현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한 바 있고, 이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대표 변리사를 지냈으며 법무법인 충정에서 특허부를 총괄했다. 현재 청우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를 맡고 있다.
문의 : (02)521-7671
e-mail : kimsh@chwpat.com